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자료 기증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Plan for the Procedure of Gift Materials in Korean Academic Libraries

김진주, 신호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최재황,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Jin-Joo Kim, Ho-Seok Shin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Jae-Hwang Choi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대학도서관에서 자료기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료기증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대학도서관의 자료기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자료기증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1. 서론

기증은 도서관 자료의 중요한 원천이며, 장서개발과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 자료구입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료가격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각 대학도서관은 전자자원 구독비용이 급등하여 대학마다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서개발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학종합평가의 도서관평가 영역에서도 장서수가 평가요소로 포함되어 있어 각 대학은 장서규모 증대의 한 방안으로 기증자료를 조건 없이 받고 있다.

어떤 기증자료는 매우 가치가 있어 도서관 장서로 등록되지만, 다수의 기증자료는 도서관 장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증자료의 처리에는 직원의 시간과 처리 공간,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증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증자료의 처리과정에서 기증자의 바람과 도서관의 필요

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료 기증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도서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ARL 장서통계기준 상위 10개 대학도서관의 자료기증 절차에 대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장서수 기준 상위 30개 대학도서관의 자료기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자료기증 현황과 개선방안을 알아보는데 있다.

2. 미국 대학도서관의 자료기증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미국 대학의 도서관은 다음과 같다.

순위	대학명	장서수
1	Harvard	15,391,906
2	Yale	11,389,504
3	Illinois, Urbana	10,191,895
4	California, Berkeley	9,812,997

5	Columbia	8,650,258
6	Texas, Austin	8,482,207
7	UCLA	7,988,925
8	Michigan	7,958,145
9	Wisconsin, Madison	7,807,097
10	Cornell	7,365,268

*ARL Statistics 2003-04 참조

2.1 기증자료의 수용

대부분의 대학도서관 기증자료는 도서관에 수령되자마자 바로 도서관의 재산이 되며 보유, 위치선정, 이용과 처분에 관한 결정권도 도서관이 가진다. IFLA에서 제시한 장서개발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장서개발정책에 기증자료의 취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 공식 성명서를 이용하여 도서관 직원은 원하지 않는 기증자료를 정중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IFLA, 2001).

하버드대학 법대 도서관은 도서관의 수집 영역 밖의 기증자료, 제한을 가지고 있는 기증자료, 현존 장서의 복본, 다른 보관소에 더 적합한 기증자료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학의 하부 주제 분야별로 기증을 환영하는 자료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1].

일리노이대학의 경우 형태적으로 상태가 나쁜 자료, 저널 논문이나 도서의 발췌본, 낱짜, 시간, 발표자만 기재하여 제출한 보고서, 보고서의 초록을 포함하지 않은 회의자료는 수용하지 않거나 장서에 추가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 전형적인 자료는 시대에 뒤진 학부수준의 교재, 대중적인 페이퍼백 자료, 복본 자료이다. 중요장서는 중요기증자료조사위원회가 해당 기증자료의 장서로서 지적 적합성, 최초 보관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도서관의 보관 공간 유무, 처리 인력과 보조자원의 유무, 그 기증자료의 보존, 매체전환 등 보존처리의 필요성, 처리와 보존의 자금마련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오염되거나, 해충이 많은 자료 역시 수용하지 않

는다[3].

UCLA 도서관은 장서의 범위가 아닌 자료, 대학의 교수와 연구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는 자료, 기존 장서와 중복되는 자료, 광범한 보존이 필요한 자료, 기증자의 제한이 수반되는 자료는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7].

코넬대학은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의 유지비용 뿐만 아니라 신속한 처리를 돕기 위하여, 기증자에게 기증한 자료 100책 당 최소 \$1,000을 요구하고 있다[10].

텍사스대학은 기증증서에 저작권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여 저작권 양도 여부도 기증자가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6].

이처럼 각 대학마다 도서관 장서에 불필요한 장서를 최대한 적게 수용하여 도서관의 시간적,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귀중하고 적합한 자료를 기증받기 위하여 기증자료의 수용 원칙을 명확하게 나타내어 부적합한 자료의 기증을 거절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기증자료를 수용한 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감사편지를 보낸다. 예일대학은 특별기증의 기증자료 전체 목록은 제공하지 않고, 처리를 완료한 후 장서에 추가된 자료의 목록만을 제공하고 있다[2].

2.2 기증자료의 처리 절차

예일대학은 개별기증, 대량기증, 특별기증으로 구분하여 기증파일의 관리, 선택을 위한 조사 절차, 선택후 처리지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각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해 두고 있다[2].

일리노이대학에서는 저널은 결호를 채우거나, 손상된 자료를 대체하고, 그 저널에 관심있는 다른 도서관에 제공한다. 또한 저널은 판매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재생이용으로 보낸다[3].

2.3 불필요한 자료의 처분

회귀도서와 필사본, 아카이브를 제외한 일반

기증자료 중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처분에 대하여 예일대학의 경우는 ①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과 교환 또는 기증, ② 합법적인 서적상에 판매, ③ 조직이나 도서관이 대중에게 판매, ④ 폐기의 4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필요하지 않은 자료는 서적상에 입찰가를 요청하여 최고 입찰가로 판매한다. 서적상에 판매할 수 없다면 다른 도서관에 기증할지 결정한다. 복본, 대체된 판 등 많이 남은 자료는 시장가치가 거의 없으므로 도서관이 직접 폐기한다. 산성지로 되어 부서지는 자료는 새로운 종이, 마이크로필름이나 디지털 포맷으로 매체를 전환하는 보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입찰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서적상에 입찰가를 요청하여 판매하고, 그 외에는 도서관이 직접 처분한다. 또한 대중에게 도서관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다른 자료의 구입에 이용할 수 있다[2].

2.4 세금감면 관련 기증자료의 평가

미국에서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s)에서 \$5,000이 넘는 가치의 기증에 대해서는 자격있는 평가자의 평가를 받고, 8283 서식을 제출해야 하고, 기증하기 전 60일보다 더 앞서 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대학이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IRS, 2005). 평가준비 및 비용은 기증자의 단독책임이며 도서관은 단지 자격 있는 외부 평가자를 제안해 줄 수 있다. 평가비용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5,000이 넘는 가치의 기증에서 \$500 초과 가치의 자료가 원래 수령한지 2년 내에 판매, 기증, 교환이나 폐기에 의해서 대학 소유권 밖으로 전달된 경우, 그것으로 받은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8282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2.5 자료기증 외의 기부제도

각 대학도서관별로 자료 외에 다양한 종류의

기부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도서관 후원 프로그램(Friends of Library)을 운영하는 대학이 많다.

하버드대학의 경우 계획된 기증, 기념기증과 보존, 접근과 기술, 장서, 시설, 직원을 위한 기부와 도서관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버드대학도서관 후원 프로그램(Friends of the Harvard College Library)은 1920년대에 도서관에 대한 인식 증가와 장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동창, 도서관 이용자, 교수, 직원의 집단으로 생겼다. 원래 목표는 도서관의 수서와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오늘날에는 이에 추가하여 도서관의 홍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

UCLA의 경우 도서관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 직접기증, 유가증권, 대응기부, 부동산, 유증(遺贈), 자선기부연금이 있다. 한편 UCLA도서관은 1995년에 시작하여 2005년 말에 마감한 캠페인에서 목표액 4천만 달러에 도달하였다(UCLA library, 2006).

위스콘신대학에서는 도서관 후원자그룹에서 기증자료 중 장서에 추가되지 않은 자료로 도서관 판매 행사를 연 2회 개최한다. 평균 \$20,000 정도의 수익을 올리며 수익금은 연간 강의 시리즈, 도서관 자료 구입, 기타 학술지원 방문프로그램에 사용한다[9]. ARL도서관의 대부분(76.67%)이 원하지 않는 기증자료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41개 도서관은 \$500에서 \$80,000의 수익을 올렸다(Leonhardt, 1997).

후원자에게 주는 혜택은 도서관 행사나 전시회 초대, 뉴스레터 발송, 도서관 이용 등 대학마다 비슷하며 콜럼비아대학은 해당 홈페이지에 동창과 도서관 후원자를 위한 전자자원, 디지털 컬렉션과 프로젝트를 연결하여 도서관 장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원자의 기부금액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대학도서관마다

도서관 단독 또는 대학 동창회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자료기증 외에 장서구입이나 도서관이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나 운영, 시설 등에 필요한 금전 등의 기부를 홍보하고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3.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자료기증

자료기증에 대한 설문조사의 대상은 국립대학도서관보(2006) 및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원교 편람(2006)을 참고하여 장서수 기준 상위 30개 대학도서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대학도서관의 기증업무 담당자에게 e-mail을 통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문항은 관련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설문지 구성은 기증자료정책 유무, 기증자료의 수용 및 제한, 기증자료의 처리, 불필요한 기증자료의 처분, 자료기증 외의 기부제도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7월 24일에서 8월 7일까지 실시하여 20개 대학(67%)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3.1 기증자료 현황

20개 대학의 전체 장서에서 기증자료의 비율은 평균 17.8%였으며, 2005년도 연간 수서통계에서 기증자료의 비율은 평균 22.1%로 장서관리에서 자료기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3.2 자료기증의 장려

설문에 응답한 20개 대학도서관에서 자료의 기증을 받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안내 및 홍보는 14개 도서관(70%)이 실시하고 있었다. 자료 기증에 대한 감사표시로는 수령증, 감사장 또는 감사패, 소정의 선물 증정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기증자료의 양이나 가치에 따라 차등하여 혜택을 주었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곳은 6개 대학(30%)이었다<표 2>.

<표 1> 기증자료 현황

구 분	내 용	
전체장서에서 기증자료의 비율	응답 도서관수	13(65%)
	무응답 도서관수	7(35%)
	최소 1% ~ 최대 36%	
	평균 17.8%	
2005년도 기증자료의 양	응답 도서관수	19(95%)
	무응답 도서관수	1(5%)
	최소 25책(점) ~ 최대 42,320책(점)	
	평균 12,102책(점)	
2005 수서 통계에서 기증자료의 비율	응답 도서관수	19(95%)
	무응답 도서관수	1(5%)
	최소 1% ~ 최대 61 %	
	평균 22.1%	

<표 2> 도서관의 자료기증 장려

구 분		도서관 수
자료기증제도	실 시	20(100%)
	미실시	0(0%)
자료기증제도 안내, 홍보	실 시	14(70%)
	미실시	6(30%)
자료기증 감사표시 (복수응답 포함)	하지 않음	0(0%)
	수령증, 감사장	17(85%)
	감사패, 선물	11(55%)
	도서관이용혜택	6(30%)
	기 타	4(20%)

3.3 기증자료의 수용

17개 대학도서관(85%)이 성문화된 기증자료 정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19개 도서관(95%)이 기증자료의 수용에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복본, 물리적 상태가 나쁘거나, 장서수집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외에 연속간행물, 복사본 등을 제한하는 대학도 있었다 <표 3-1>.

<표 3-1> 기증자료의 수용

구 분		도서관 수
성문화된 기증자료정책	있다	17(85%)
	없다	3(15%)
기증자료 수용 제한	둔다	19(95%)
	두지 않는다	1(5%)
제한할 경우 이유 (복수응답포함)	복본	18(90%)
	나쁜 물리적 상태	15(75%)
	도서관의 장서수집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15(75%)
	오래된 발행년도	6(30%)
	기타	3(15%)

기증자가 기증자료에 대한 이용 제한이나, 별도 장소 보관, 기타 물질적 보상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수용방침은 자료의 가치에 따라 협의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도서관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 처리하는 곳도 있었다<표3-2>. 이는 미국 대학도서관에서 조건이 부과된 기증을 거절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수용방침이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 조건이 부과된 기증자료의 수용

구 분		도서관 수
조건이 부과된 기증자료의 수용여부 (복수응답포함)	수락	1(5%)
	거절	2(10%)
조건이 부과된 기증자료의 수용여부 (복수응답포함)	협의 후, 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	14(70%)
	기타	4(20%)
	무응답	1(5%)

대부분의 도서관(90%)이 기증자료의 처리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었으나, 기증자료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증자와 이견이 생길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는 기증자료의 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표 3-3>. 따라서 기증자

료의 처리에 대한 도서관의 권리를 명시하여야 하며, 기증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기증자의 이해를 전제로 기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표 3-3> 기증자료에 대한 도서관의 권리

구 분		도서관 수
기증자료처리 사전 안내	알린다	18(90%)
	알리지 않는다	1(5%)
	기타	1(5%)
도서관의 기증자료 통제권 소유	있다	18(90%)
	없다	2(10%)
기증자와의 이견발생 유무	있다	8(40%)
	없다	12(60%)
이견 발생 이유 (복수응답포함)	소장위치(별치 등)	3(15%)
	대출제한,이용제한	0(0%)
	장서로 미등록된 자료의 처리	7(35%)
	보상 요구	1(5%)
	기타	0(0%)

3.4 기증자료의 정리 및 이용

기증자료의 정리와 이용은 각 대학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이용은 대부분의 도서관이 구입한 일반장서와 같이 보관하고 이용시키고 있었으나, 기타로 응답한 도서관에서는 대규모의 기증으로 인한 개인문고 설치 시에는 별도 장소에 자료를 보관하여 별치기호를 부가하며,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4-1>, <표 4-2>. 이는 기증자료의 대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

<표 4-1> 기증자료의 정리

구 분	도서관 수
별치기호 부여, 로컬태그 사용	0(0%)
별치기호 부여, 로컬태그 미사용	5(25%)
별치기호 미부여, 로컬태그 사용	3(15%)
별치기호 미부여, 로컬태그 미사용	5(25%)
기타	7(35%)
무응답	1(5%)

* 복수응답 포함

<표 4-2> 등록된 기증자료의 보관, 이용

구 분	도서관 수
고서, 귀중서 외에는 구입도서와 같이 배가, 대출제한 없다	18(90%)
구입도서와 같이 배가, 대출제한	0(0%)
별도 장소 보관, 대출가능	1(5%)
별도 장소 보관, 대출제한	0(0%)
기타	4(20%)

* 복수응답 포함

3.5 불필요한 자료의 처분

등록을 하지 않은 불필요한 자료의 처분은 대부분의 도서관이 타 기관과의 교환용으로 이용하거나, 기증 또는 폐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기타로 응답한 도서관에서는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되돌려주기도 하였다<표 5>.

<표 5> 불필요한 자료의 처분

구 분	도서관 수
타기관과 교환 또는 기증	18(90%)
서적상에 판매	0(0%)
도서관매행사를 통해 판매	1(5%)
폐기	15(75%)
도서관내외의 별도 장소에 보관	2(10%)
모두 등록하므로 처리한 적 없음	0(0%)
기타	3(15%)

* 복수응답 포함

3.6 자료기증 외의 기부제도

현재 도서관 자체로 도서관 후원을 위한 기부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5개 도서관(25%)이었으며 운영을 논의 중인 대학도 있었다<표6>.

<표 6> 자료기증 외의 기부제도

구 분	도서관 수	
운영여부	운영	5(25%)
	미운영	15(75%)
운영한다면 홍보방법 (복수응답포함)	학교 홈페이지	2(10%)
	도서관 홈페이지	4(20%)
	인쇄매체	0
	기타	0

3.7 기증업무 담당자의 의견

자료기증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에서는 기증자료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 적극적인 기증활동의 필요성, 기증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대 담당자: 자료기증업무는 사명감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우며 공간문제, 복본처리문제, 기증자 예우문제 등 자관에 맞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B대 담당자: 필요 없는 자료들이 대부분이라 선별에 드는 시간에 비해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C대 담당자: 기증제도는 참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정보로써의 이용가치(최신성)가 떨어지는 도서들을 연구실 정리 차원에서 기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실정이다. 일부의 기증자들은 등록된 이후 리스트를 요구하기도 한다. 왜 등록이 되지 않느냐? 왜 서가에 없느냐? 하는 항의를 받기도 한다. 정보로써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하는 제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는 힘든 상태이다.

D대 담당자: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에서는 기증이 피해악이라고 생각한다. 양질의 자료, 희귀자료는 가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퇴직교수나 지역민의 기증자료의 경우 처치곤란인 경우가 많다. 대학평가 등을 대비하여 장서량 확충을 위하여 기증을 한시적으로 받을 때도 있으나 대학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기증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대 담당자: 자료기증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더욱이 도서구입비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자료 기증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자료 기증을 꺼리는 도서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도서관의 경우는 단 한편의 자료일지라도 비록 기증받아 바로 폐기처분할 지라도 기증의사를 밝히면 만사 체처 두고 달려가서 자료를 수령해 온다.

4. 요약 및 결론

자료기증은 기증자의 선의와 모래속의 진주처럼 가치있는 자료를 찾으려는 도서관의 필요가 만나서 이루어진다. 자료기증은 계속될 것이며, 기증자료의 효과적인 처리는 도서관 장서관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대학도서관에서 기증자료가 전체 장서에서 평균 17.8%를 차지하고, 2005년 기증자료의 규모는 도서관 당 평균 12,102책(점), 연간 수서통계의 22.1%에 해당된다. 이는 자료기증이 장서관리와 유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증자료의 처리 또한 매우 중요함을 말해준다.

둘째,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성문화된 기증자료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증자와 이견이 발생하며, 정보가치가 떨어지는 기증자료가 많았다. 기증자료정책에 수용할 기증자료를 명기하고 적합한 선택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 소유권, 위치선정, 이용과 처분에 대한 도서관의 권리 등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규모 기증인 경우 별도의 문고를 설치하여 대출을 제한하는 도서관이 상당수 있다. 고서, 희귀본 등을 제외하고는 대출제한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불필요한 기증자료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주로 타 기관에 교환·기증, 또는 폐기를 하고 있는데 처분 방법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 대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도서관매행사도 기획해 볼만하다.

다섯째, 미국에서는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할 경우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섯째, 일부 대학도서관만이 자료기증 외의 기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료

구입, 시설, 운영을 위한 도서관 후원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 모색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기증업무 담당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기증자료는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처리절차상에 어려움이 많다. 이는 도서관의 비용, 장서의 질적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선이 절실하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도서관 관련 협회 등에서 개별 도서관들이 적용할 수 있는 기증자료 처리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증자료 업무는 장서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업무이다. 도서관은 신중하게 기증자료정책을 작성하고 기증자에게 충분히 알려져 자료기증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도서관 장서는 단순히 자료의 집합체가 아니라 대학의 교수와 연구, 학습을 지원하는 최적의 자료로 구성된다는 인식의 확산과 도서관의 존재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인용 2006. 6. 4]
<<http://klaw.go.kr>>
- ARL Statistics 2003-04. 2005.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cited 2006. 7. 12]
<<http://www.arl.org/stats/pubpdf/arlstat04.pdf>>
- Guidelines f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Using the Conspectus Model. 2001.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Section on Acquisition and Collection Development*. [cited 2006. 8. 1]
<<http://www.ifla.org/VII/s14/nd1/gcdp-e.pdf>>
- Kertesz, Christopher J. 2001. "The unwanted

gift: when saying 'no thanks' isn't enough." *American Libraries*, 32(3): 34-36.

Leonhardt, Thomas W. 1997. "The Gifts and Exchange Function in ARL Libraries: Now and Tomorrow." *Library Acquisition: Practice & Theory*, 12(2): 141-149.

Publication 561 (Rev. October 2005). 2005. Determining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ited 2006. 7. 31]
<<http://www.irs.gov/pub/irs-pdf/p561.pdf>>

UCLA Library Reaches Campaign Goal. 2006. *UCLA Library Development News*. [cited 2006. 7. 29]
<http://www2.library.ucla.edu/pdf/Development_News_Spring_2006_FINAL.pdf>

<미국 대학도서관 기증정책, 기부제도
웹 사이트>

[1] Harvard University Library
<http://hul.harvard.edu/gift.html>
<http://hcl.harvard.edu/info/giving>
<http://hcl.harvard.edu/info/giving/friends.html>
<http://www.law.harvard.edu/library/collections/special/donor/index.php>
[2] Yale University Library
<http://www.library.yale.edu/CDC/public/documents/gifts/index.html>
[3]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http://www.library.uiuc.edu/administration/collections/gifts/>

http://www.library.uiuc.edu/administration/collections/policies/gofts_policy.htm

http://www.library.uiuc.edu/friends/index.php?page=make_a_gift_inc.html

[4]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ttp://www.lib.berkeley.edu/AboutLibrary/giving_to_library.html

[5] Columbia University Health Science library
<http://library.cpmc.columbia.edu/hsl/giftpol.html>

[6]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ttp://www.lib.utexas.edu/development/gift.html>

[7]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ttp://www2.library.ucla.edu/libraries/255.cfm>
<http://www2.library.ucla.edu/development/1675.cfm>

[8]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http://www.lib.umich.edu/staff/acqser/eg/public/index.html>
<http://www.lib.umich.edu/friends/giving/index.html>

[9]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ttp://giving.library.wisc.edu>

[10] Cornell University
<http://www.library.cornell.edu/colldev/giftpolicy.html>